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o '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' 개정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를 조정코 자 함.

2. 주요골자

-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실과 변경(안 제3조 제2항 제2호)
 - · 감사담당관실, 기획관광국,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
- 3. 개정조례안 : 별첨
- 4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5. 관련법령: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
- 6. 관련부서 의견 : 해당없음
- 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- 8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9. 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10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.

목포시 조레 제 호

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"기획실, 총무국"을 "감사담당관실, 총무국, 기획관광 국"으로 하고, "체육시설관리사무소"를 "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"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행 개 정 안 현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기획총무위원회 2. 기획총무위원회 가. 감사담당관실, 총무국, 기획관광 가. 기획실, 총무국, 보건소, 상수도사업 소, 문화예술회관, 향토문화관, 체 국, 보건소, 상수도사업소, 문화 예술회관, 향토문화관, 문화체육 육시설관리사무소, 동 소관에 관 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, 동 소관에 관한 사항